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Micro DIPS(지역주력산업 연계) 창업기업 모집공고

독보적 기술우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내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및 고성장 분야(AI 등) 집중 지원을 위한 「Micro DIPS(지역 주력산업 연계)」에 참여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중요]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 구성 현황 >

구분	주요 내용		공고일정(안)
① Micro DIPS	고성장 분야(AI, 펩리스 등) 집중 지원 및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AI 핵심 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AI 스타트업 (sLLM, 제조AI, 바이오AI, 콘텐츠AI)	모집완료
	지원규모	·5개사, 기업당 1.5억원 내외 (1년)	
AX 스타트업 육성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 (제조AI, 바이오AI, 콘텐츠AI)	모집완료
	지원규모	·15개사, 기업당 0.8억원 내외 (1년)	
AI 지역 주력산업 연계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AX 스타트업 (AI)	★공고★
	지원규모	·10개사, 기업당 0.8억원 내외 (1년)	
펩리스 스타트업 일관지원	지원대상	·창업 10년 내 펩리스 스타트업	모집완료
	지원규모	·30개사, 1억원 ~ 2.5억원 내외 (1년)	
② DIPS	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준비		
DIPS 창업사업화	지원대상	·초격차 10대 기술별 창업 10년 내 딥테크 스타트업	모집완료
	지원규모	·182개사, 기업당 최대 3억원~6억원 이내 (3년)	
③ Beyond DIPS	국내 최상위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현지 정착 촉진		
Beyond DIPS 창업사업화	지원대상	·DIPS를 졸업한 창업 10년 내 딥테크 스타트업	모집완료
	지원규모	·15개사, 기업당 최대 6억원 ~ 10억원 이내 (2년)	

1

(Micro DIPS) 지역산업 연계 AX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 중소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AX 협업 매칭을 통한 예비 DIPS 스타트업 육성
- 지원대상** :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수요기업)*과 협업을 통해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창업 10년 이내 AI 스타트업(AX)

* 지역특화산업육성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R&D 참여기업 등

< 지역 주력산업 기술개발 및 수요 연계 예시 >

예시	수요기업(지역 중소기업 등)	⇔ 매칭·선정	AI 스타트업
	AI 영상 분석, AI 영상 생성		AI 영상·분석 기술 보유

※ 지역 중소기업과의 매칭 및 컨소시엄 확정은 선정평가 시 진행 예정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5개월 내외 (’25.7월~12월, 5개월)
-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과제별 0.8억원)
- 지원내용** : ① 협업 자금, ② AI 기술개발, 판로확보(신규 거래처 확보 등)

< 지역 주력산업 연계 AX 지원 내용 >

세부항목	주요 내용	비고
협업 프로젝트 자금	·기업당 0.8억원 내외 협업 자금	타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불가*
프로그램 등	·기술 고도화 및 신규 거래처 확보	

* 협업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금은 지역 주력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수요기업과 수립한 협업 과제를 위한 비용으로만 집행 가능하며, 타 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

- 협업분야** :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등 지역 중소기업 등 5개 분야 13개 과제

※ 세부 수요 기술 및 분야는 하위 참고사항 및 별첨 파일 참고

〈 참고 〉 5개 분야 13개 수요 기술 과제(요약, 세부 내용은 별첨 참고)

지역	분야	수요기술(요약)
광주	미래 모빌리티	· 스폿 용접 특성(열 영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AI 모델 구축 등
충북	미래 모빌리티	· 자동차 부품 외관 불량 유형 분류 및 라이브러리 대체 딥러닝 SW
충북	바이오·헬스	·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인 피부 타입 분류 및 소재 배합 최적화 AI
충북	바이오·헬스	· 천연물 및 미생물 기반 유효성분 선별, 효능 예측 및 독성 예측 AI
강원	바이오·헬스	· 증상 진단, 처방, 제품 추천 및 건강관리 솔루션 AI 기술
강원	바이오·헬스	· 500배율 정자 영상의 딥러닝 CNN 기반의 AI 알고리즘 개발
부산	바이오·헬스	·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한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대소변 특징 분석
경북	바이오·헬스	· AI 기반 개인 맞춤형 신체 밸런스 상태(기울기, 비틀림 등) 분석
광주	바이오·헬스	· 골프공 구질 정보 기반 모션 이미지 생성, 분석 및 골프 티칭 솔루션
제주	친환경·에너지	· 전력 거래 최적화 및 RE100 달성을 위한 분산 에너지 연동형 AI
충남	스마트팩토리	· 당사의 불량 검출 시스템과 융합가능한 자가 생성 알고리즘 개발
울산	스마트팩토리	· 자동용접 실시간 공정 데이터 분석, 자동 보정, 이상 감지 AI
대전	화학	· 합성 공정 최적화 및 공정분석을 통한 개발기간 단축 방향 제시

2

세부 지원 내용

1] 협업 프로젝트 수행 자금

정부
지원

70%
미만

· 선정된 스타트업 대상 0.8억원의 협업 프로젝트 자금 지급

★ 지역 주력산업 수요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집행

★ 지급되는 정부지원사업비는 AI 분야 스타트업에만 지급되며, AI 스타트업에서 집행

★ 타 창업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붙임 2 참고)

자기
부담

30%
이상

· 총 사업비(정부지원+자기부담사업비)의 **30% 이상** 발생 (현금·현물 제한 없음)

★ 협약체결 시 ¹대응자금 투입계획서 및 ²증빙 필수 제출 (→ 선정 시 안내)

★ 현물로 보유·구매 예정인 기자재의 경우 잔존가치액 혹은 구입금액의 10%로 계상

* 잔존가치는 구매시점으로부터 5년간 구매금액의 20%만 인정, 5년 초과 시 10%로 계상

★ 자기부담사업비는 배정되는 정부지원금에 따라 산출

★ 연말시점, 자기부담사업비 미집행금액에 대해 비율 계상을 통한 정부지원금 환수

예시

구분	정부지원사업비 (70% 미만)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		총 사업비 (100%)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지역산업 협업 (AX)	0.8억원	69.0%	0.36억원	31.0%	1.16억원	100.0%

2] 초격차 프로그램

공통
프로그램

실증

·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AI 기술·제품·서비스 실증 지원

인·허가

· 국제 표준과 기술·제품·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증 지원

집적단지

· 광주 AI 집적단지 내 인프라(AI 컴퓨팅 자원, 실증센터 등) 이용 지원

3] 후속 지원

후속
지원

· 차년도 **DIPS, Beyond DIPS** 신청 시, **우대 혜택** 제공 (우대선정, 가점 등)

★ (DIPS) 3년간 최대 6억원(평균 4.5억원), (Beyond DIPS) 2년간 최대 10억원(평균 7.0억원)

※ 프로그램은 선정된 스타트업 현황, 지원수요 등에 따라 변경·고도화 가능

※ 후속지원(차년도 DIPS 우대)의 세부 형태, 방법, 규모는 차년도 DIPS 공고를 통해 안내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기업

◆ 신청 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6월 20일 이후 창업한 기업

-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신청 제외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일반유희주점업
2. 무도유희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외 경제질서,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재참여 불가 사업 현황 >

1. '20~'22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BIG3) 지원사업
2. '23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
3. '24~'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⑤ '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글로벌 유형 내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또는 협약체결확정서를 제출한 자(기업)

< 주요 참고사항 >

1. [참고1] 2025년 중앙정부 창업지원사업 현황(동시수행 관련) 참고
2.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연도가 2025년이 아닌 경우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예 2024년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된 경우, 본 사업 신청·선정 가능)
3. 지자체의 지원사업은 사업 수행 여부, 사업연도,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⑥ 중소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⑦ 신청일 기준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⑧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⑨ '25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⑫ 기타 중소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및 평가 절차

□ 접수기간 : '25년 6월 19일(목) ~ 7월 10일(목), 15:00까지

□ 제출서류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

* 온라인 제출 파일의 크기는 30MB 이하

** 사업계획서는 별첨양식(한글파일) 외 자율형식(MS WORD, PPT 등)으로 제출 가능
(단, 사업계획서 지정된 작성 항목은 필수 작성)

***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발표자료(국·영문)를 제출하며,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현황 >

구분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별도 파일 제출 X
②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최종 단계)	작성 항목 준수, 양식 자율
③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제출
④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시)		법인사업자에 한해 온라인 제출
협약체결 확정서	선정기업 별도 안내 예정	선정기업 제출(별도 안내)

□ 신청방법 :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된 '신청접수 매뉴얼' 참고

- ◆ **사업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접수 마감일 2~3일 이전에 K-스타트업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서 작성 등 미리 진행 권장**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 **접수는 15:00에 종료되며,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및 접수증을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평가 참여**
- ◆ 온라인 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완료** 처리
-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사항에 대한 **수정·변경 등 절대 불가**
- ◆ 사업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의 계정으로 신청**해야하며, 타인의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 취소** 혹은 **평가 탈락** 처리
- ◆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기술분야**는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에는 수정 가능하나,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변경 절대 불가**
- ◆ K-스타트업 누리집 신규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하며,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가입 이전 **SIREN24**를 통한 **실명등록 및 적용 요청** 필요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내외 소요)

□ 평가절차 : 1단계 서류평가 (1.5배수 내외), 2단계 발표평가 (1배수)

- **서류평가** : 제출서류(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기반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규모의 1.5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정
- **발표평가** : 별도 평가단 대상 발표(10분) 후 질의응답(10분)을 통해 기업역량, 사업계획을 검증하여 **Micro DIPS 후보기업 선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일정(안) >

평가단계		수행기관	주요내용	일정(안)
요건검토		전문·주관기관	· 신청 자격 등 요건검토	6월중
1단계	서류평가	주관기관	· 제출서류 기반 서류평가	7월중
2단계	발표평가		· 서류평가 통과기업 발표평가	7월말
정부지원금 배정		주관기관	· 선정기업 정부지원금 배정 심의	7월말
최종선정		주관기관	· 최종선정 공지 및 정부지원금 안내	8월초

* 창업기업 접수 및 평가 현황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 **평가지표** : 기술성, 협업 기술 분야와의 연관성, 기대 성과 등 과제 특성에 따른 평가지표를 통해 우수 AI 스타트업 검증
 - 서류평가 : 신청기업 기술성을 검증하며, 협업 분야 연관성, 글로벌 시장 사업화 성장 가능성 과 역량을 집중 검증
 - 발표평가 : 신청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장성과 협업 내용 등의 구체성 및 성장성, 향후 기대 성과 등 검증

< 서류·발표평가 지표 구성(안) >

구분	세부항목	평가내용
서류평가 (1.5배수)	기술성	· AX 수요기술에 대한 스타트업 AI 기술 수준
	협업 연관성	· AX 수요기술과 스타트업 제안 과제의 AI 기술 관련성
	성장성	· AI 스타트업 사업화 역량 기반 글로벌 성장 가능성
토론식 발표평가 (1배수)	시장성	· AI 스타트업 보유 기술의 글로벌 수요 및 확장 가능성
	협업 구체성	· AX 수요기술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제품화, 시장 적용 가능성
	기대 성과	· AX 기대 성과 및 글로벌 적용 가능성

□ **사업 운영 일정(안)**



* 창업기업 접수·평가 및 사업 운영 현황 등에 따른 일정 변동 가능

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기업민원 피해신고**

-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정보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 제외(탈락)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협약 취소** 가능
- ② 사업 신청 내용이 **공고, 규정에 위배** 되거나,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내 허위 기재, 도용 등이 확인된 경우 **평가·선정 제외**
- ③ 선정자(기업)가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할 경우, '25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서류·발표)에서 제외

④ 고의·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금 환수(전액) 등의 제재 부여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 가능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의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시행

⑤ '25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이 불가

※ 현재 수행 중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사업 연도가 2025년이 아닐 경우('24년 등), 사업 수행 여부, 잔여 협약기간에 관계 없이 신청·선정 가능

※ 2개 이상 사업에 중복으로 신청·선정되는 경우,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한 사업에 한해 협약 체결이 가능하며, 협약체결 확정서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⑥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요건(자격, 제외 대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 가능

※ 선정 이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재확인하며,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가능

⑦ 사업신청자(대표자) 또는 신청기업 내 임직원은 '25년 동 사업의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② 평가 중 유의사항

①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서류평가의 결과는 주관기관에서 사업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에 평가 결과(서류통과·탈락)에 관계 없이 개별 안내

- ③ 발표평가에는 신청자(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특정 사유로 인해 발표평가에 불참할 경우, 주관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한 후 위임장을 통한 대리 참석(발표)이 가능하나, 대리 참석자는 제출한 사업계획(과제)에 참여하는 창업기업 내 임직원으로 한정하며, 대표자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 ④ 발표평가 대상기업은 발표평가 전,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발표자료(국·영문)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 ⑤ 주관기관은 평가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의 녹음·녹화가 가능하며, 국민평가단 운영 시 발표평가장 내 평가 전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 국민평가단은 평가 결과에는 관여할 수 없고, 평가 과정 내 발생 가능한 부정 발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에 한해 수행

- ⑥ 발표평가의 일정·장소 등은 서류평가 결과 안내 시 개별 안내

- ⑦ 이의신청은 전체 평가 과정의 종료 후 절차, 일정, 방법 등 주관기관의 별도 안내에 따라, 창업기업당 1회에 한해 가능

- ⑧ 선정 후보기업 중 협약체결 확정서를 제출한 창업기업에 한해 심의 후 선정기업으로 최종 확정 예정

③ 선정 후 유의사항

- ①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기업)에 대한 신청요건(자격, 제외대상) 및 유사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가능

- ②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집행·관리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집행·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 ③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협약 중단,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가능
- ④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별도 심의를 통해 선정·협약 취소 등 제재 조치 가능
- ⑤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협약 취소, 정부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 ⑥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부정수급(정부지원금 횡령, 편취, 용도 외 집행 등)으로 인한 환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 가능
- ⑦ 선정자(기업)는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를 개설해야하며,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협약 취소
-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협약 취소

④ 선정자(기업)의 의무

< 사업 수행 관련 >

- 선정자(기업)는 창업진흥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 협약을 유지해야 하며, 협약 중간 시점 내 협약 종료 불가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목표 달성을 포함한 전체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운영요령, 지침,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및 모집공고문 내 기재된 사항에 대한 숙지와 준수를 통한 사업 완수
- 정부지원 사업비를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 지정 회계법인이 안내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급 목적에 맞는 집행·사용
- 정부지원금 집행 내역에 대해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지정 회계법인에서 요구하는 수정·보완 안내에 대한 성실한 대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의 프로그램, 행사에 대한 성실한 참여
- 정부지원 사업비를 통해 취득한 자산의 분실, 도난, 훼손을 방지하며, 분실, 도난, 훼손 등 발생 시 즉시 주관기관에 대해 고지

< 사업 종료 이후 >

-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창업진흥원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의 집행 내역·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 포함)의 보관(5년간)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 기타 사항 >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원활한 사업 운영·고도화를 위한 자료 요청, 간담회 참석, 정책 제언 등 요청 사항에 대한 성실한 대응

6

문의처

-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 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062-610-3949, 062-610-3945)

참고 1

창업 여부 기준표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 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 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 ② 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2

2025년 동시수행 불가 창업지원사업 목록

※ 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기준

※ 사업 목록은 2025년 사업 기준이며, 참여 중인 사업이 창업사업화 지원임에도 사업 연도가 다른 경우(23년, 24년 등) 동시 수행 가능

※ 아래 현황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의 창업지원사업 동시 수행 가능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 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3	· 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4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Micro DIPS(핵심사업화-AX, 팍리스 일관지원), DIPS, Beyond DIPS)	중소벤처기업부
5	·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팁스 창업사업화, 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6	· 통합 창업패키지 지원(특화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7	· 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8	· 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9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0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11	·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2	·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3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4	·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15	· 예술기업 성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6	·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7	· 스포츠산업 창업중기(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8	·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19	· 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0	· 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1	· 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2	·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3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4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
25	· 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6	· 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평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27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가진단(신청기업 기준)

※ 본 내용은 사업 신청 자격과 관련한 사항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공고문의 신청 자격 미숙지, 관련 증빙 미첨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신청 전,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들을 정확히 확인 및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

※ '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있을 시, 공고문에 따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

순번	상세 내용	해당 여부	
		Y	N
1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가상자산사업자 금융거래 관련 업태를 영위 중이신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신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신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이신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창업제외 업종에 해당되시나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대표자, 임직원께서 동 사업의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 등으로 참여 중이신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대표자, 임직원께서 동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이 있으신가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타 창업지원사업 신청·수행 여부

※ 현재 신청 또는 수행 중인 국가/공공기관 타 창업지원사업 내역 기재

순번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신청)금액	수행 상태
1	사업명	00000	00.00.00 ~ 00.00	(단위 : 원)	신청 / 선정 등
2					
3					
4					
5					
...					

3.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등록	00 건	출원	00 건	인증	00 건
----	------	----	------	----	------

순번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권리권자
1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 등		000000	
2				
3				
4				
5				
...				

본인은 위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없음에 동의합니다. (서명)

□ 지역산업 AX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개요(요약)

창업기업 소 개	※ (표는 삭제후 제출)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혹은 보유한 원천기술 소개,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의 글로벌 대비 기술우위 수준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 (표는 삭제후 제출) AI 스타트업 보유 기술의 글로벌 수요 및 확장 가능성 ※ (표는 삭제후 제출) AI 스타트업의 사업화 역량 기반, 글로벌 스타트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창업기업-지역수요기업 연계과제	※ (표는 삭제후 제출) 협약기간 내 추진 예정인 과제산출물(형태, 수량 등) 및 현재 유사 제품 또는 서비스 진행단계 등 * 진행단계 : 아이디어 기획, 시제품 제작, 제품 양산·출시 등	
창업기업-수요기업 연계과제 추진 동기 및 목적	※ (표는 삭제후 제출) 과제를 추진하게 된 ①외적 동기(사회·경제·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 ②내적 동기(대표자 및 창업팀 보유역량, 가치관 등) ※ 과제 추진에서 창업기업의 보유 기술력, 제품 등을 연계하여 지역수요기업에게 제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추진 방법 및 역량	※ (표는 삭제후 제출) 연계과제 추진방법 및 필요역량 등	
산업 내 목표시장	※ (표는 삭제후 제출) 특화산업 내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전망, 주요 고객 특성 등	
산업 외 목표시장	※ (표는 삭제후 제출) 특화산업 외 목표시장의 규모·상황, 전망, 주요 고객 특성 등	
실현가능성	※ (표는 삭제후 제출) 과제 기간 내 연계 프로젝트 결과 도출 가능성	
이미지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설계도 등 삽입(해당 시)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1. 창업기업 개요

1-1. 아이템(제품, 서비스 혹은 기술) 소개

※ 창업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 작성, 원천기술의 글로벌 대비 기술우위 수준 표기

○

-

○

-

1-2. 글로벌 확장성 소개

※ 창업기업의 보유 기술의 글로벌 수요와 확장 가능성 기재

○

-

○

-

1-3. 글로벌 성장성 소개

※ 창업기업의 사업화 역량 기반, 글로벌 스타트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기재

○

-

○

-

2. 연계과제 개요

2-1. 연계과제(제품, 서비스 혹은 기술) 소개

※ AX 수요신청서를 참고하여 지역주력산업 기업의 수요와 연계된 창업기업이 보유한 과제(제품, 서비스 혹은 기술)을 소개하고, 핵심 BM모델 등을 서술

○

-

○

-

2-2. 연계과제 추진 동기 및 목적

※ ①외적 동기(사회·경제·기술 분야 국내·외 시장의 문제점 등), ②내적 동기(대표자 및 창업팀 보유역량, 가치관 등)의 관점에서 과제를 추진하게 된 동기를 기재

※ 과제 추진에서 창업기업의 보유 기술력, 제품 등을 연계하여 지역수요기업에게 제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 필요성, 기대효과 등

○

-

-

○

-

-

2-3. 연계과제 개발·개선

- ※ 지역 수요기업의 AX 수요신청서를 참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연계과제에 대해 본 사업 수요에 따라 참여(5개월 내외)를 통해 개발·개선·제공하려는 과제
- ※ AX 수요신청서를 참고하여 고객 요구사항, 경쟁사 대비 등 개선 근거 제시

○

-

-

○

-

-

○

-

-

3. 연계과제 수행 계획

3-1. 지역 주력산업 내 목표시장

3-1-1. 지역 수요기업 연계 AX 프로젝트 모델(AXM)

※ 연계과제 수익 모델(AX Project Model) 기재

○

-

3-1-2. 목표시장 현황

※ 목표시장의 수요 규모·상황, 전망, 주요 고객 특성 등

○

-

-

3-1-3. 목표시장 도입 계획

※ 특화산업 내 목표시장에 연계과제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

○

-

-

3-2. 지역 주력산업 외 목표시장

3-2-1. 목표시장 현황

※ 특화산업 외 목표시장의 수요 규모·상황, 전망, 주요 고객 특성 등

○

-

-

3-2-2. 목표시장 확장 계획

※ 특화산업 외 목표시장에 연계과제를 확장 시키기 위한 계획

○

-

-

3-3. 결과도출

3-3-1. 실현가능성

※ 과제기간 내 연계 프로젝트 결과 도출 가능성

○

-

-

3-4. 해외시장 진출 현황 및 계획

3-4-1. 해외시장 진출 현황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목표시장, 진출 시기, 홍보·마케팅 및 유통·판매 현황 등 기재

○

-

-

< 진출 실적 >

순번	국가명	유통 채널명	판매 내용	진출 시기	판매 금액
1	OO국가	OO마트	OO아이템(00개)	00.00.00. ~ 00.00.	00백만원
2	OO국가	OO기업	OO아이템(00개)	00.00.00. ~ 00.00.	00백만원
...					

3-4-2. 해외시장 (추가)진출 계획

※ 성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 진출 방안(관련분야 인력·네트워크 등 포함) 및 예상 매출금액 등 기재

-

< 매출 예상 >

순번	국가명	유통 채널명	판매 내용	진출 시기	판매 금액
1	OO국가	OO마트	OO아이템(00개)	00.00.00. ~ 00.00.	00백만원
2	OO국가	OO기업	OO아이템(00개)	00.00.00. ~ 00.00.	00백만원
...					

3-5. 출구(EXIT) 목표 및 방안

3-5-1. 투자유치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방안 등 기재

○

-

3-5-2. 인수·합병 (M&A)

※ 인수합병(M&A)를 통한 사업확장 또는 출구전략에 대한 중·장기 전략 기재

○

-

3-5-3. 기업공개 (IPO)

※ 기업의 경쟁력 강화,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 중·장기 전략 기재

○

-

2-5-4. 정부지원사업비

※ R&D,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통한 자금 확보전략 등

○

-

3-6. 사업 추진 일정

3-6-1. 사업 전체 로드맵

※ 사업에 참여하는 5개월 내외간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및 종합적인 추진 일정 등

○ (협약초기, 7월~8월)

-

-

○ (협약중기, 9월~10월)

-

-

○ (협약말기, 11월~12월)

-

-

< 사업 추진 일정(全 단계) >

순번	추진 내용	추진 기간	세부 내용
1	수요기업 요구 정리	00.00.00. ~ 00.00.00.	00기업과의 계약 체결
2	개발 및 실증	00.00.00. ~ 00.00.00.	
	국내외 시장 진출		00, 00국가 진출
...			

4. 투자유치 계획

4-1. 외부 투자유치 현황 및 계획

4-1-1. 외부 투자유치 현황 (예정 포함)

※ 설립일로부터 누적 외부 투자유치규모 기재

○

-

< 투자 이력 >

순번	투자처	투자 내용	투자 시기	투자 규모
1		투자유형 및 투자목적 등	00.00.00.	000백만원
2			00.00.00.	000백만원
...				

4-1-2. 외부 투자 신규 유치 계획

※ 위에 기재된 투자유치 이력 외 신규 투자 유치 계획

○

-

< 유치 계획 >

순번	투자처	투자 내용	투자 시기	투자 규모
1		투자유형 및 투자목적 등	00.00.00.	000백만원
2			00.00.00.	000백만원
...				

5. 기업 구성

5-1. 대표자 현황 및 보유역량

※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경영 능력, 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 등) 기재
 * 유사 사업화 경험, 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이력, 관련 교육 이수 현황, 관련 수상 실적 등 포함

○

-

5-2. 기업 현황 및 보유역량

※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시설, 직원 역량(경력·학력, 기술력 노하우 등) 기재

○

-

○ 재직 인력 고용현황

현재 재직 인원(대표자 제외)	00 명	추가 고용계획(협약기간 내)	00 명
------------------	------	-----------------	------

※ 사내 핵심 인력 및 본 과제 참여 인력 작성

순번	직위	성명	담당 업무	보유역량(경력 및 학력 등)
1	공동대표	000	S/W 개발 총괄	컴퓨터공학과 교수 재직(00년)
...				

○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역량(경력 및 학력 등)	채용 시기
1	해외 영업	00학 전공, 관련 경력(00년 이상)	00.00.00
...			

○ 고용 관련 지원사업 수혜 여부

※ 고용·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및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예정 포함) 해당사항 기재
 *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 대상

순번	지원사업명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 기간
1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보수 지원(직원명)	00.00.00~00.00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표자 및 근로자 사회보험료 일부	예정
...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 제품·서비스와 관련하여 협력 예정인 업무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협력사항 등 기재

순번	파트너명	보유역량	협력사항	협력 시기
1	○○전자		테스트 장비 지원	00.00.00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하단의 [표] 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실천계획 기재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개요** :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간에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 2)

구분		내용
현금	경영성과급	기업 차원에서 이익 또는 이윤 등의 경영성과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성과를 회사 종업원들과 공유하는 경영활동
	직무발명보상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 등에서 직무발명의 대가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주식	우리사주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공제 및 기금	내일채움공제	5년 이상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공동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제기구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조성한 기금

* 출처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1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법을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의 성과공유제와는 다른 제도임

○

-

<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현황 및 계획 >

제도명	도입 여부	주요내용	실적
내일채움공제	완료('00.00)	정관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과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기재	근로자 2인 적용
스톡옵션	완료('00.00)	'00.00 제도도입 이후 기업 주주총회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	총 0명, 000주 (0000원) 행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정('00.00)	기금조성 및 기금법인 설립, 운용규정 마련	00백만원
...			

6. 사업비 집행 계획

6-1. 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자기부담사업비) 집행 목적 및 방향

-
-
-
-

< 사업비 집행계획 >

※ 정부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70% 미만, 자기부담사업비는 30% 이상(현금, 현물 제한 없음)
 ※ 사업비는 협약기간('25.7.1. ~ '25.12.01.) 동안 사용할 정부지원사업비+자기부담사업비 기준으로 작성

비 목	산출근거	사업비(원)			
		정부지원사업비 (a)	자기부담사업비(b)		합계 (a+b)
			현금	현물	
재료비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3,448,000			3,448,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7,652,000			7,652,000
외주용역비	• 시금형제작 외주용역(000제품 ... 플라스틱금형제작)				7,000,000
...					
...					
합 계	

[참고]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 개정된 기준 확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초격차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비 목	기 준
<p>재료비</p>	<p>☞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함 · 협약기간 내에 납품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해 집행 가능 · 협약기간은 기본지원 창업기업은 최대 3년, 후속지원 창업기업은 최대 2년으로, 각각 사업 참여의 총 기간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협약기간(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 내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사업비로 집행된 선집행액(선금 등)의 환수 조치 가능 · 재료 또는 원재료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 연관성이 높고,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p>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SW등)</p>	<p>☞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용 PC, 노트북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무용 컴퓨터(모니터 포함), 사무용복합기, OA기기, 범용 S/W 구입비 집행 가능 ·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배송비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되는 기자재 구입비(S/W 구입비 포함)로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종료일은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지원이 종료되는 최종 연도의 협약종료일로 간주 ** 단,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사업비로 집행된 선 집행액(선금 등)의 환수 조치 가능 · 구매한 기자재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5년간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처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최종 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관리 및 임의처분 불가 · PC, 노트북 등 개인 사무용 PC는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별 1대에 한하여 구입 가능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생활가전, 소모품 등 구매비용으로 집행 불가. 다만,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생활가전은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승인 후 구매 가능 · 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는 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 가능하며, 통신비 지급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협약기간 동안의 통신비로 집행 가능 · 아이템 개발을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기기 및 장비 구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단순 제품홍보를 위한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입 불가 · 초격차 창업기업의 기술-제품 개발과 연관된 대형 장치(차량 등) 구매 시,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후 구입 가능

비 목	기 준
외주 용역비	<p>☞ 기술개발, 산업동향 파악 등 과제 연관성이 높은 과업 중 초격차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과업에 대해 외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등이 필요한 경우 집행가능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분야 종사경력, 외주용역대상의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제품의 제작 경험 보유 필요 · 외주용역비는 수행완료 후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분할지급(선급금, 잔금)으로 집행 가능. 선급금이 500만원(VAT 포함) 이상일 경우,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500만원(VAT 포함) 미만인 경우는 각서로 대체 가능 · 외주용역 결과물이 협약종료시점에 정상적으로 구동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집행 불가 (예시 : 과업범위 이하의 개발결과물 도출, 온라인 스토어 미등록 등) · 선급금은 계약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집행 불가 · 프리랜서 중개서비스(크몽, 위시켓 등)를 통한 사업비 집행 불가 · 초격차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에 대한 사업비 집행 불가 · 금형제작을 포함,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외주용역 불가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초격차 창업기업 간 거래 전,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통하여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필히 검토 · 2천만원(VAT 포함) 이상의 외주용역 계약 시,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통해 용역업체, 금액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된 경우에 한해 계약·진행 가능 <p>* 단, 불가피한 사유(보안 등)로 사전심의가 어려운 경우, 위탁용역 계약체결 이전에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에 사전심의 생략을 위한 사유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통해 사전심의 생략을 요청</p>
특허권 및 무형자산 취득비	<p>☞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출원 및 등록비,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집행 가능 · 최초 협약시작일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청구, 등록비 등)과 등록 시 발생하는 대리인 성공보수로 집행 불가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초격차 창업기업 본인(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 법인명으로 출원) 이어야 함 <p>* 단, 타인 또는 타 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 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등록에 발생하는 성공보수의 집행 불가

비 목	기 준
인건비	<p>☞ 초격차 창업기업의 소속직원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대표자 인건비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기간 중 신규로 채용한 인력과 기 고용된 인력의 인건비 집행 가능. 다만, 신규 채용 인력은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에 신규 채용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종료일은 기본지원 3년, 후속지원 2년의 지원이 종료되는 최종 연도의 협약종료일로 간주 · 인건비는 사업자 개시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자 (기업)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초격차 창업기업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를 선지급 후 정부지원금 소급적용 가능 ·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 집행 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직원은 참여율 100% 한도 내에서 타 정부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 등)에 동시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에 인건비(정부지원금, 대응자금 포함)가 계상된 임직원은 타 지원사업(중앙부처, 지자체, 공공 기관 등)에 등재된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대응자금 내 인건비를 타 정부지원사업의 지원금으로 산정 불가 *** 타 정부지원사업과의 중복 참여(참여율 100% 이상의 동시 참여 등) 검토를 위해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회계법인의 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관련 자료 요구 가능 · 초격차 창업기업은 인건비 지급 시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 ·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미가입시 인건비 집행 불가 ·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 · 초격차 기업 소속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 근로 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
여비	<p>☞ 초격차 창업기업 대표,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사업장 소재지를 벗어나 출장 등의 사유로 소요되는 여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 지출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 버스, 발권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 숙박 비용에 한해 실비 집행 가능 (국내, 해외 구분 없이 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숙박비는 숙박비 청구 시점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내 금액을 상한액으로 제한 · 창업사업화 통합관리지침 제43조에 의거,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 집행 불가 · 본 사업의 여비는 출장의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국외 출장 사유 발생 시 출국일 이전에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하여 해외 여비 집행의 적정성 검토 후 출장 수행 · 항공운임은 Economy Class급에 한해 집행 가능 · 고속도로 통행료 집행 가능 · 유류, 가스, 전기 또는 수소 충전 등 자차, 법인차량 운행 비용 집행 불가

비 목	기 준
지급 수수료	<p>☞ 사업화를 위해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비) 초격차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완성·고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으로, 창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의 이전,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계약에 한하여 집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와 집행과정은 이전기관 내부 규정을 우선하며,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전담기관장 또는 주관기관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형태로 진행 * 기술이전 계약 시, 기술의 명칭, 이전금액, 사용기간, 이전내용, 이전절차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이전비 집행 시 기술이전에 관한 증빙자료 첨부 * 법인기업은 법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이 원칙 * 기술이전 금액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금액에 한해 인정하며, 기술이전 금액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하나, 공공기관이 자체 기준에 따라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적정금액을 평가하여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기술평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허청 산하 발명진흥회 지식재산중개소가 운영하는 국가지식 재산거래플랫폼(http://www.ipmarket.or.kr)을 활용한 특허거래전문관의 중개로 가격산정 및 거래 협상이 된 경우 집행 가능 · (학회·세미나 참가비) 초격차 창업기업 내 대표, 임직원의 학회 또는 세미나 참가비(등록비)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시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통역비 등 · (시험인증비)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 되는 비용 · (기자재임차비) 창업아이템 사업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자재 임차 시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단가 적용 * 차량(승용차,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등의 임차비는 집행 불가하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의 심의·승인 후 집행 가능 *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기간 내 월 납부 금액에 한해 집행 가능 · (사무실임대료) 창업아이템 개발 등을 위해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발생하는 월 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업화 주관기관 담당자가 임대 공간 방문 등을 통한 임차여부 확인 가능 * 임대 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 * 창업아이템 개발·생산을 위한 공간 임대가 아닌, 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 코워킹스페이스(공유사무공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해당 주소가 확인 되는 경우에 한하여 월 단위 계약 시 집행 가능 ·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 초격차 창업기업 제품의 운반, 수출 시 발생하는 운반비, 보험료, 보관료의 실 소요비용 · (법인설립비) 창업기업의 국내외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 (세무·회계비) 가장대행 수수료, 개인·법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집행 불가 · (기술보호비) 기술 임치(갱신)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집행 불가